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(안 제40조 개정)

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·통보된 재해복구계획(용지보상비는 제외)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10억원 이상”을 “30억원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 복구사업)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”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·통보된 재해 복구계획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<u>10억원 이상</u> 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.	제40조(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 복구사업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억원 이상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